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7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 ○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단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 ○ 자원봉사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추가 (안 별표)

3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 :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제4조
 나. 예산조치 : 2017 예산에 1억원 미만 반영되었음.
 다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 [기획감사실-8056(‘17. 9. 5.)]
 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해당 없음 [주민복지과-53566(‘17. 9.28.)]
 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[예고기간 : ‘17. 8.24.~ ‘17. 9.13.]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보조금 지원 대상사업(제11조 관련)

사 업 명
1.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1) 자연보호 자연정화활동사업 2. 지역사회개발·발전에 관한 활동 1) 사회단체협의회 지역사회발전사업 3.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1) 청소년 극기캠프교실 2) 청소년 안전문화지도 활동사업 4.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1) 역량강화 교육사업 5.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1)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6.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1) 범죄예방 선도 및 보호활동사업 7.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1)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활동사업 8.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) 태극기 선양 및 각종사업 9.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관한 활동 1) 찾아가는 마을봉사활동사업 2) 중고물품교환판매소 운영사업 10.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지원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]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(제11조관련) 1. ~ 9. (생략) <신 설>	[별표]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(제11조관련)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지원